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기업용)

- 구매기업용 -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지원을 위한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함에 있어 은행과 구매기업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하며, 은행과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 여신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3. “발주서”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은행에게 전송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4. “대금지급확약비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의해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협력기업의 납품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기업이 반드시 결제하여야 하는 당연변제의무비율로서, 발주서 상 대금지급확약비율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5. “채권확정”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채무를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 구매자료를 은행에 전송하여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6. “납품기한”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해야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7.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일자로서, 매출채권의 결제일을 말합니다.
8. “매출채권”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미래채권 등을 말합니다.
9.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HanaCBS Light, HanaCBS, BiCNET 등을 말합니다.
10.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발주서 전송, 채권확정,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 전송 등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 조 (발주명세에 대한 대금의 지급)

- ① 구매기업은 은행에게 통보한 발주명세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실명번호	계좌번호

- ② 은행은 입금된 대금을 별도의 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③ 협력기업의 미래대출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미래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구매대금을 그 대금지급일에 전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 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대출계좌나 당좌대출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⑤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명세에 대하여 미래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⑥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통보한 발주명세를 기초로 하여 제6조에서 정한 대금지급확약비율의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 취소, 변경, 계약불이행 등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⑦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통보한 발주명세를 기초로 하여 제6조에서 정한 대금지급확약비율의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⑧ 구매기업이 제1항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 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대상거래처의 선정)

이 협약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발주명세를 전송하는 대상은 구매기업이 추천하거나,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은행과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협력기업으로 하되, 협력기업이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이 경우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 봅니다) 기타 이에 유사하여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단, 은행의 내규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신용공여기간)

이 협약에서 정하는 신용공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 분	신용공여기간
대금지급일	발주일(또는 통보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서 발주서 전송시 정하기로 하며, 외상매출채권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 전송 등 채권확정 거래시 최종 확정하기로 합니다.
납품기한	발주일(또는 통보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에서 발주서 전송시 정하기로 합니다.
채권확정기한	납품기한 이내에서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확정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금지급확약비용)

① 이 협약에 의한 대금지급확약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구 분	대금지급확약비용
<input type="checkbox"/> 모든 협력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 적용	()%
<input type="checkbox"/> 발주서 전송시 발주서별 비율 적용	발주서 전송시 발주서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 ② 모든 협력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발주서 상 발주명세별로 대금지급확약비용의 입력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협력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발주명세 전송시 발주서별 대금지급확약비용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발주명세 전송시 대금지급확약비용을 누락한 경우 발주명세 전송이 제한됩니다.
- ④ “모든 협력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 적용”과 “발주서 전송시 발주서별 비율 적용”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한 경우, 발주명세 전송시 대금지급확약비용을 생략한 경우에는 모든 협력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대금지급확약비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⑤ 발주서 상 대금지급확약비용의 최대 90% 범위내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 7 조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의 총 한도 및 지급의무)

①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	연계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대출의 형태별로 약정된 대출한도 또는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 1.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 상생e-안심팩토링 3. 상생일반구매론
이자율 등	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
지연배상금률	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함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변제방법	개별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구매기업은 제1항에 의해 미래대출이 취급된 발주서에 대해 변제의무를 지며, 대금지급일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협력기업에게 취급하는 대출금액의 총잔액은 제1항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매출채권의 양도)

- ①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중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중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②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필요시 “매출채권양도승낙서”를 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

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협력기업의 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발주명세의 전승, 취소 및 변경)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명세의 취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12조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행한 후에는 발주명세의 취소나 변경이 제한되며, 통보 당시의 발주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① 발주명세의 전승,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구매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 용도로만 발주명세를 전승할 수 있습니다.
 2. 발주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발주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발주명세 상 납품기한, 대금지급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5. 구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주명세를 전승,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주명세등록신청서” 및 해당 명세를 파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물품 등의 구매계약 해지,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의 이유로 발주명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명세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가. 협력기업이 발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대출을 실행한 경우
 - 나.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8. 구매기업이 발주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명세 전승시,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발주명세의 협력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며, 채권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협력기업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미래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기 취급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11.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승한 발주명세를 협력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명세 전승이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구매기업이 이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3. 구매기업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4. 구매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구매기업에게 은행연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이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한 발주명세를 전승하는 경우
 7.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용도 외의 발주명세를 전승하는 등,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8.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협력기업에 대하여 발주명세를 전승하는 경우
 9. 이 협약 제13조(한도 감액, 정지)에 의하여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10. 협력기업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거래 제한이 등록된 경우
 11.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상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 11 조 (채권확정)

- ①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납품 완료 즉시 매출채권을 확정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확정기한은 납품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승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하여야 하며, 해당 명세의 지급일(또는 결제일)을 대금지급일로 정하기로 합니다.
- ③ 구매기업은 기 전승한 발주서상 대금지급확약비율 해당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확정이 되도록 구매자료를 전승하여야 합니다.
- ④ 구매기업이 이 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출채권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기전승한 발주명세에 따라 대금지급일에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지급확약비율 해당 금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대출취급 및 제한)

은행은 제10조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주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 별 통보금액의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까지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 ① 협력기업의 대출신청은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약정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의 전산에 게시된 협력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발주서를 담보로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 받기로 합니다.
- ②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한도 감액, 정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7조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및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기업의 대출취급 금지, 매출채권거래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구매기업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이용시간)

- ① 은행은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5 조 (협약서의 효력)

-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명세에 대하여는 해당 만기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 ⑤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6 조 (협약의 체결 및 변경)

- ①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이 협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협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구매기업, 협력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④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지점장(인)

주 소 :

[구매기업]

기업명 : _____ (인)

주 소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함.

구매기업

(인)

